



제420회국회(임시회)
제1차보건복지위원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서영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5108호)

2025. 1.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1. 다른 사람에게 그 의사에 반하여 마약류를 투약하는 등의 행위 가중처벌	3

I. 개요

1. 서영교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5108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서영교의원 등 12인

(2) 제 안 일 : 2024. 10. 31.

(3) 회 부 일 : 2024. 11. 1.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마약을 소지·소유·관리 또는 수수하는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음.

최근 들어 술이나 음료수에 마약을 몰래 넣어 성폭행 등 다른 범죄로 악용하는 사건이 지속되고 있는데, 몰래 마약을 음료수 등에 넣는 행위를 마약을 소지하는 행위 등과 동일하게 처벌하는 것은 범죄의 고의성 등을 고려할 때 적정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음.

특히, 학계 연구에 따르면 마약류를 경험한 여성들은 약물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타의로 시작하게 된 경우가 전체의 12.5%에 달했고, 특히 술이나 커피에 몰래 들어간 마약을 복용한 경우는 5.8%를 기록했음.

이에 다른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마약을 은밀하게 투약할 목적으로 제공한 사람에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형벌을 강화하여

제2차 범죄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59조제1항제9호 및 제3항).

Ⅱ. 주요 내용별 검토

1. 다른 사람에게 그 의사에 반하여 마약을 투약·제공하는 행위 가중처벌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현행법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마약을 투약 또는 제공한 자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안 제59조제1항제9호), 다른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마약을 투약 또는 제공한 자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함(안 제59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5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 7. (생략) 9.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마약을 <u>소지·소유·관리 또는 수수하거나</u>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한외마약을 제조한 자 10. ~ 14. (생략) ② (생략) <u><신설></u> ③·④ (생략)	제59조(벌칙) ① ----- ----- -----. 1. ~ 7. (현행과 같음) 9. ----- <u>소지·소유·관리·수수·투약 또는 제공하거나</u> ----- ----- 10. ~ 1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u>제1항제9호의 죄 중 다른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마약을 투약 또는 제공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u> ④·⑤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
※ 시행일: 공포 후 3개월	

나. 검토의견

□ (마약의 투약·제공에 대한 벌칙 규정) 현행법 제4조제1항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취급행위 일체를 금지하고 있는데¹⁾, 이를 위반할 경우 행위별로 경중에 따라 적용되는 벌칙을 달리 규정하고 있음.

- 마약의 경우, ‘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 또는 그러한 목적의 소지·소유’에 대하여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소지·소유·관리·수수’에 대하여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규정하고 있는데, ‘투약 및 제공’에 관하여는 처벌규정에 명시하지 아니하고 미성년자에 대한 투약 및 제공에 대해서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하고 있음²⁾.
- 향정신성의약품의 경우,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소유·관리·수수 및 투약·제공하는 자에 대하여 현행법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음³⁾.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 제3조제2호·제3호, 제4조제1항, 제18조제1항 또는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마약을 수출입·제조·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자 또는 그러한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7. 제4조제1항 또는 제5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수수·조제·투약·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이나 임시마약류를 매매·수수·조제·투약·제공한 자

제5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9.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마약을 소지·소유·관리 또는 수수하거나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한외마약을 제조한 자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 개정안은 법문언에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마약을 투약 또는 제
공한 경우’에 대한 문구를 추가하고 있는데, 제4조제1항의 내용을
제59조 벌칙조항에 명확하게 나열하고자 하는 취지로 이해됨.

< 현행법 제4조제1항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규정 >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⁴⁾		
		나목	다목	라목
수출입·제조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제58조제1항제1호)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제58조제1항제6호)	1년 이상 유기징역 (제59조제1항제10호)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제60조제1항제3호)
매매·매매알선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제60조제1항제2호)		
소지·소유·관리·수수	1년 이상 유기징역 (제59조제1항제9호)			
투약·제공	*미성년자에 대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제58조제1항제7호)			

제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4) 현행법상 향정신성의약품은 가목부터 라목으로 분류되는데, 제2조제3호가목 향정신성의약품은 제3조제5호의 적용을 받고, 제2조제3호마목 향정신성의약품에 관하여 현행법상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향정신성의약품”이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의료용으로 쓰이지 아니하며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나.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매우 제한된 의료용으로만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다. 가목과 나목에 규정된 것보다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고 의료용으로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그리 심하지 아니한 신체적 의존성을 일으키거나 심한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라. 다목에 규정된 것보다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고 의료용으로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다목에 규정된 것보다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킬 우려가 적은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열거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다만, 다른 약물 또는 물질과 혼합되어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열거된 것으로 다시 제조하거나 제제할 수 없고, 그것에 의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 (타인의 의사에 반하는 마약 투약·제공행위 가중처벌) 최근 술이나 음료 등에 마약류를 몰래 투입하여 이를 마시고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 상태에 처한 상대방에게 강간·사기 등의 범죄를 행하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음⁵⁾.

□ 마약류의 강제 투약은 타인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성범죄와 같은 2차 피해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자기 투약에 비해 더욱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으나, 현행법은 ‘다른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마약류를 투약·제공하는 경우에 관한 가중 처벌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음.

□ 이에 개정안은 다른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마약을 투약 또는 제공하는 자에 대한 벌칙 규정을 마련하여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가중처벌하려는 것으로, 타의에 의한 마약류의 불법 투약을 방지하고 범죄피해자를 보호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바 입법 취지가 타당하다고 생각됨.

□ 다만, 개정안은 다른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마약을 투약·제공하는 경우에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가중처벌에 대하여는 법체계적인 측면에서 법정형의 합리성과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예컨대, 「형법」상 동일한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는 범죄는 상해치사죄, 유기·체포·감금 등의 치사죄, 인질강요죄, 강도죄, 인질강

제3조(일반 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제2조제3호가목의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이를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수수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5) [참고] 다른 사람에게 마약류를 투약한 범죄 사례

도죄 등이 있음⁶⁾).

□ 또한, 음료 등에 투입되는 약물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고 마약보다 향정신성의약품의 투약 및 소지 범죄가 많은 점 등을 고려할 때⁷⁾, 입법 취지를 달성하기 위하여 규율대상을 마약에 한정하지 않고 향정신성의약품을 포함한 마약류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아울러, “다른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마약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양형요소로 고려할 수 있는데, 실무상 마약류를 투약하여 강간이나 강제추행에 이르렀다면 「형법」상 강간치상·강제추행치상으로 의율될 가능성이 높고⁸⁾, 이는 이미 무기 또는 5년 이상

6) 「형법」

제259조(상해치사)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75조(유기등 치사상) ① 제271조 또는 제273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81조(체포·감금등의 치사상) ① 제276조 내지 제280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324조의2(인질강요) 사람을 체포·감금·약취 또는 유인하여 이를 인질로 삼아 제3자에 대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333조(강도)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336조(인질강도) 사람을 체포·감금·약취 또는 유인하여 이를 인질로 삼아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7) 음료에 몰래 투입되어 범죄에 활용되는 약물 종류인 GHB, 필로폰, 졸피뎀 등은 현행법상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됨.

<범죄유형 단속 현황 (단위: 명)>

	밀조	밀수	밀매	밀경	투약	소지	기타	합계
합계	6	1,235	7,904	3,081	10,899	1,859	2,627	27,611
점유율(%)	(0.0)	(4.5)	(28.6)	(11.2)	(39.5)	(6.7)	(9.5)	(100)
대마	0	236	1,057	129	1,936	342	385	4,085
마약	0	74	250	2,952	335	141	218	3,970
향정	6	925	6,597	0	8,628	1,376	2,024	19,556

*자료: 2023년 마약류 범죄백서, 대검찰청 제공

8) 수면제와 같은 약물을 투약하여 피해자를 일시적으로 수면 또는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한 경우에도 약물로 인하여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면 자연적으로 의식을 회복하거나 외부적으로 드러난 상처가 없더라도 이는 강간치상죄나 강제추행치상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한다(2017도3196판결).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징역의 형으로 처벌하고 있는 점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 참고로, 개정안과 유사한 취지로 다른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마약류를 투약·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한 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⁹⁾」이 우리 위원회에 다수계류 중이므로, 함께 심사할 필요가 있음.

다. 관계 부처 및 관련 단체 의견

- (식품의약품안전처) 다른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마약을 투약 또는 제공한 사람에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형벌을 강화하여 2차 범죄를 예방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에 동의함.

- 다만, 유사한 취지로 발의된 다른 개정안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법무부) 다른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마약을 투약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엄하게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이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2차 범죄행위를 근절하려는 개정안의 입법취지에 공감함.

- 다만, 현행법상으로도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투약·제공한 경우에는 미성년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301조(강간 등 상해·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9) 권영세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1003호, 2024. 6. 26. 발의
민형배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1507호, 2024. 7. 8. 발의

중하게 처벌이 가능하고, 성인에게 의사에 반하여 마약을 투약·제공한 경우에도 ‘마약의 사용’ 행위로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음.

- 또한, 성폭력 목적으로 마약을 투약·제공한 경우에는 마약범죄(1년 이상의 유기징역)와 성폭력범죄(강간·강제추행치상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의 경합범으로 중하게 처벌이 가능하여 현행법 체계상 처벌 공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 한편, 개정안 제59조제3항의 “다른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마약을 투약 또는 제공한 자”에서 “제공”은 다른 사람의 의사에 반하는 제공행위를 상정하기 어려우므로 “사용”으로 규정하고, 법체계상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 관련 조항에도 가중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등 보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504

【참고】	다른 사람에게 마약류를 투약한 범죄 사례
-------------	-------------------------------

2020 마약류 범죄백서 3장 280쪽	2013. 6.~ 8.경 서울지역 폭력조직 '신림동 이글스파' 조직원 등 5명이 채팅으로 만난 여성 청소년을 모텔로 유인하여 필로폰을 강제로 투약시킨 뒤 강간 (서울서부지검)
2020 마약류 범죄백서 3장 281쪽	2015. 4.경 피의자들(58세, 택시운전사 / 44세, 무직)이 피해자와 성관계 등을 목적으로 삼페인에 필로폰을 몰래 타서 피해자에게 마시게 하여 투약 (서울동부지검) 2015. 5.경 피의자(48세, 무직)가 필로폰을 투약한 환각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후 중앙선을 넘어 도주하면서 차량 13대를 연달아 들이받아 추돌 (인천지검) 2015. 5.경 피의자(41세, 무직)가 피해자에게 수면제인 졸피뎀, 디아제팜을 복용시켜 항거불능상태를 야기한 후 간음하여 상해 (부천지청) 2015. 6.경 부산 광안대교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피의자(37세, 무직)가 경찰관의 검문에 불응하고 2km 가량 도주하다 전신주 2개를 충격하여 공공기물 파손 (부산동부지청) 2015. 8.경 서울 광화문 호텔 실외 수영장에서 피의자들(39세, 22세)이 향정신성 의약품을 몰래 술에 타 피해자 2명에게 먹인 후 강간 (서울중앙지검)
2020 마약류 범죄백서 3장 284쪽	2019. 1.경 골프연습장에서 피해자와 내기 골프를 치던 피의자들(54세, 도박 벌금 2회 / 60세, 도박 벌금 2회)이 커피에 필로폰을 몰래 타서 피해자에게 먹이고, 이에 사리판별을 못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 (부산서부지청) 2019. 6.경 피의자들(46세, 스크린골프장 운영 / 46세, 자영업, 도박 등 전력 5회)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로라제팜을 음료수에 몰래 섞어 피해자에게 마시게 한 후, 정신이 혼미해진 피해자와 내기 골프를 하는 방법으로 1억여 원 편취 (인천지검)
2021 마약류 범죄백서 3장 261쪽	2019. 6.경 서울 강남구 다세대주택에서 피의자(22세, 무직)가 필로폰을 투약한 다음 환각상태에서 이웃집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가위로 협박해 자신의 집으로 끌고 가 12 시간 동안 감금하고, 감금하는 동안 피해자에게 2회에 걸쳐 필로폰이 섞인 물을 마시게 하거나 유사강간을 하면서 동영상 촬영 (서울중앙지검)
2021 마약류 범죄백서 3장 264쪽	2008. 3.경 경기 양주시 OO면 유원지 앞 도로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피의자(38세, 무직)가 차량에 피해자를 감금하고, 커터칼로 위협하면서 필로폰이 섞인 생수를 강제로 마시게 한 뒤 강제 추행 (의정부지검)